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해방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동 사업금 및 가산금을 투자계정의 세입으로 하고, 이를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 5월31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산업자원부 이 희 범  
장 관

◎法律 第7554號

特許法 일부개정법률

特許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特許法”을 “특허법”으로 한다.

제81조의3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 제4항(중전의 제3항) 및 제5항(중전의 제4항)중 “제2항”을 각각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전의 제5항)중 “제4항”을 “제5항”

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8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실시 중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그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료의 3배를 납부하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특허권은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제106조제1항중 “國防상 필요한 때에는 特許權을 收用하거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수용하거나(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방상 필요한 때
2.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해당하는”을 “해당하고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하에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하여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5.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유효성분,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진단키트를 포함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수입국”이라 한다)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0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특허청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을 함에 있어서 재정을 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부과하여야 한다.

-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국내수요충족을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실시할 것
- 2.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생산된 의약품 전량을 수입국에 수출할 것

⑤특허청장은 재정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가 결정에 참작할 수 있다.

- 1.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시

정하기 위한 취지

2.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국에서의 경제적 가치

제107조제6항중 “第1項第3號 및”을 “제1항제3호(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실시)에 한한다) 또는”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 내지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수입국은 세계무역기구회원국 중 세계무역기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한 국가 또는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한민국정부에 통지한 국가에 한한다.

- 1. 수입국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의 명칭과 수량
- 2.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이 아닌 경우 당해 의약품의 생산을 위한 제조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수입국의 확인
- 3. 수입국에서 당해 의약품이 특허된 경우 강제적인 실시를 허락하였거나 허락할 의사가 있다는 그 국가의 확인

⑧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특허된 의약품
- 2. 특허된 제조방법으로 생산된 의약품
- 3.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특허된 유효성분

4.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특허된 진단키트

⑨ 재정을 청구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그 밖에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9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청취) 특허청장은 재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0조의 제목 “(裁定の方式)”을 “(재정의 방식 등)”으로 한다.

제110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재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의약품과 외관상 구분할 수 있는 포장·표시 및 재정에서 정한 사항을 공시할 인터넷 주소

4. 그 밖에 재정을 받은 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약에 규정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

제11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허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청구일

부터 6월 이내에 재정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제10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청구가 동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고 동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가 모두 제출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하여야 한다.

제1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2(재정서의 변경) ① 재정을 받은 자는 재정서에 명시된 제110조제2항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서에 명시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11조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재정서에 명시된 제110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허법 개정이유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공중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 무역기구(WTO)에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일부규정의 효력을 유보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동 결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실시중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에 일정기간내에 이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허권의 회복(법 제81조의3제3항 신설)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실시중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에 그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 부터 3월 이내에 특허료의 3배를 납부하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법 제107조)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재정을 함에 있어서는 재정을 받는 자에게 생산된 의약품 전량을 수입국에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 5월31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산업자원부 이 희 범  
장 관

◎法律 第7555號

實用新案法中改正法律

實用新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實用新案法”을 “실용신안법”으로 한다.

제29조의4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 제4항(중전의 제3항) 및 제5항(중전의 제4항)중 “제2항”을 각각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전의 제5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